

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,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, 신용카드사 등 부실에 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거래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1월27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
재정경제부 이 헌 재
장 관

◎法律 第7344號

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

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10호중 “信用不良者”를 “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중 “제공·이용의 제한 및 통보”를 “제공·이용의 제한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“商去來關係”를 “상거래관계(고용 관계를 제외한다)”로 하며, 동항제6호중 “債權推尋, 雇傭, 認·許可의 目的 등”을 “채권추심, 인·허가의 목적 등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2조제2항제7호중 “제24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”를 각각 “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”로 한다.

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중 “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”를 “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”로 한다.

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항 후단중 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”를 “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”로 한다.

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제19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7호중 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”를 “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”로 한다.

◇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이유
및 주요내용

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,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,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